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 회)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2월 28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는 한편,

발전원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발전용 천연가스와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6월 30일까지’로 6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3호나목 단서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5년 2월 28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라목, 같은 항 제5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및 같은 호 다목 단서 중 “2024년 12월 31일”을 각각 “2025년 6월 30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탄력세율) ①법 제1조제 7항 본문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 용할 과세대상과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의2(탄력세율) ①----- -----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별표 1 제6호바목에 해당하 는 물품: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3. ----- -----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가목 외의 물품: 킬로그램 당 275원. 다만, <u>2024년 12</u> <u>월 31일까지</u> 는 킬로그램당 212원으로 한다.	나. ----- ----- . ---- <u>2025년 2월</u> <u>28일</u> ----- -----.
4. 별표 1 제6호사목에 해당하 는 물품에 적용할 탄력세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4. ----- -----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발전용 물품(가목 및 다목 의 물품은 제외한다): <u>2024</u> <u>년 12월 31일까지</u> 킬로그 램당 10.2원	라. ----- <u>2025</u> <u>년 6월 30일</u> ----- -----
5. 별표 1 제6호자목에 해당하 는 물품: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5. ----- ----- -----

6. (생략)

6.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연 락 처	(044) 215 - 4331